

#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번호	20-117
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공공예금 이자발생으로 이자수입 88,000천원을 증액하고 공덕1구역 매각수입 감소로 재산매각수입 5,000,000천원을 감하여 당초 수입액 40,682,000천원에서 4,912,000천원 감한 35,770,000천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- 우리구 소유 토지 중 재산권 행사 및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와 서울시 소유 우리구에서 활용 가능한 토지 간 교환추진 및 임차중인 다솜경로당 계약만료에 따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르신 여가 공간을 제공코자 경로당 매입을 추진함에 따라
- 토지교환 차금 등 315,532천원과 다솜경로당 매입비 등 1,108,300천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6,335,832천원을 감하여 당초 지출액 40,682,000천원에서 4,912,000천원 감한 35,770,000천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## 3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

#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1. 기금개요

-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- 설치년도 : 2019년
- 재원조성 : 일반재산과 관련한 매각,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
- 기금용도
  - 행정재산의 매입·교환에 필요한 취득비
  - 행정재산 중 토지, 건물 및 그 종물의 설치와 보존·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
  -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

## 2. 수입계획 변경안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	기정액	경정액	증 감	비 고
합 계			40,682,000	35,770,000	△4,912,000	
세외수입			40,682,000	35,770,000	△4,912,000	
경상적 세외수입	재산임대 수입	211-02 공유재산임대료	640,000	640,000	-	
	이자수입	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-	88,000	88,000	공공예금 발생이자
임시적 세외수입	재산매각 수입	221-03 공유재산매각수입	40,000,000	35,000,000	△5,000,000	공덕1구역 매각수입 감소
	과징금 및 과태료	223-03 변상금	42,000	42,000	-	

## 3. 지출계획 변경안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	지 출 액	경정액	증 감	비 고
합 계			40,682,000	35,770,000	△4,912,000	
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확충(공유재산관리기금)			2,450	1,426,282	1,423,832	
행정재산취득	일반운영비	201-01 사무관리비	2,450	2,450	-	심의위원회 참석수당
	시설비 및 부대비	401-01 시설비	-	315,532	315,532	토지교환 차금 등
	자산취득비	405-01 자산 및 물품취득비	-	1,108,300	1,108,300	다솜경로당 매입비
재무활동 보존지출(공유재산관리기금)			40,679,550	34,343,718	△6,335,832	
보존지출	예치금	602-01 예치금	40,679,550	34,343,718	△6,335,832	예치금